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

■ 백승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1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2
2. 개정안 부칙	10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승아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9.

3. 회부연월일 : 2026. 3.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26조제2항 각 호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해당되는----- ----- -----.
<신 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신 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u>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u> ② -----제1항-----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고 그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정하고 있음.²⁾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조치(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보호자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건전성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2) 「초·중등교육법」

-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을 제한하는 입법에 해당하므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와 제한 대상이 되는 자격과의 관련성 및 다른 유사 제도와의 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는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 전체(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포괄하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권보호위원회의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³⁾에 따르면, 제1호의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제2호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침해행위의 양태와 경중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할 경우 침해행위의 경중에 상응하지 않는 과도한 자격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 제37조제2항4)에 근거를 둔 ‘과잉금지의 원칙’ 및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⁵⁾

3) 교육부,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4)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 (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한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의 최소성·관련성·균형성 기준을 고려하여 결격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행위 심각성	행위 지속성	행위 고의성	반성 정도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	-
높음	4	4	4	0	0
보통	3	3	3	1	1
낮음	2	2	2	2	2
매우낮음	1	1	1	-	-
없음	0	0	0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 제1호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	0~4	조치 없음
1호	5~1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호	12~21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도 함께 정함

둘째,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데, 결격사유의 해소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거에 해당 조치를 받

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결격상태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제한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기간의 제한 없이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22.11.24., 2020 헌마1181)을 하였고, 최근 해당 조문에 대하여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개정하는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음(법률 제20627, 2024. 12. 31.).⁶⁾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결정 요지, 2020헌마1181, 2022. 11. 24】

1. 심판대상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헌적으로 조정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입법자가 여러 정책적 대안을 숙고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셋째,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를 실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조치 이력의 조회·제공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 제31조의3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⁷⁾를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결격사유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음.

다만,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 이력의 보유기관, 조회 가능한 자료의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이 현행 규정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 기준⁸⁾을 고려하여 제31조의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

3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에서 자료요청의 대상·범위 및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보호자들을 교육활동 관련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한 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의안 번호 (대표발의)	법안명	주요 내용	회부일
2217620 (백승아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u>유치원운영위원회</u>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	‘26.3.20.
2217623 (백승아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u>교권보호위원회</u>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교육부> : 일부 수정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결격사유로 두는 필요성은 인정
- 다만, 조치의 경중, 적용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에 신중한 기준 설정 필요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되, 결격사유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법 시행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내용이 보호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점과⁹⁾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의 정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조치 이력의 조화·확인을 위한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92

참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단위: 건)

학 년 도	보호자 등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없음	기타	침해 아님	합계
'22 2학기	23 (28.3%)		43 (53%)	15 (18.5%)		81
'23	117 (33.1%)		173 (49%)	63 (17.8%)		353
'24	171 (37.1%)	110 (23.9%)	39 (8.5%)	21 (4.6%)	120 (26.0%)	461
'25 1학기	74 (39%)	46 (24%)	21 (11%)		48 (25%)	189